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4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5.

발 의 자 : 문진석 · 김한규 · 박상혁
강경숙 · 김우영 · 진선미
모경종 · 백승아 · 김의겸
윤건영 · 김문수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이 인사·조직·처우 등 직무조건과 신상 문제에 관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,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와 피해공무원 보호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,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인사·징계상 조치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,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·교육 의무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만들어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63조의2 등).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3조의2(직장 내 괴롭힘 금지) 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(이하 “직장 내 괴롭힘”이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6조의2제1항 전단 중 “범죄 또는 성희롱”을 “범죄,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범죄 또는 성희롱”을 “범죄,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“범죄 또는 성희롱”을 “범죄,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“범죄 또는 성희롱”을 “범죄,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”으로 한다.

제7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6조의4(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) 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 제76조의2(고충 처리) ① 공무원 은 인사·조직·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 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 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 할 수 있으며,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<u>범죄 또는 성희롱</u>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 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담 신 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 우를 받지 아니한다. ② (생략)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, 임	<u>제63조의2(직장 내 괴롭힘 금지)</u> 공무원은 <u>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 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 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 거나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(이하 “직장 내 괴롭힘”이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제76조의2(고충 처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범죄, 성희롱 또는 직장</u> <u>내 괴롭힘</u>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

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
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
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
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
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
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⑤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,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. 다만,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등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한 사안이거나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, 원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근 상

-----범죄, 성희
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범 죄 , 성 희 룡

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----

급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
에서 각각 심사할 수 있다.

⑥ · ⑦ (생략)

⑧ 고충상담 신청, 성폭력 범죄
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
에 대한 처리절차, 고충심사위
원회의 구성·권한·심사절차,
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령등으로 정한다.

<신설>

-----.

⑥ · ⑦ (현행과 같음)

⑧ -----범죄,
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--

-----.

제76조의4(안전한 근무환경의 조

성) 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
은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
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
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각 기
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
으로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
여야 한다.

②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
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
서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해
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근무
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
치를 하여야 한다.